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2026.03.20 조례 제2018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746-80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신설 2026.3.20.>

4.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조례 제1850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18호,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